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1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 11. 17.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4. 12.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4.12.1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4.12.11.)

-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4.12.16.)

- 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재금)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은 우리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채로 서울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

○ 국가부담 지방채 발행계획만 있는 2015년도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계획임
참고로, 2014년말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부담 지방채 원금 잔액은 3천 7백 7억여 원임

○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2조와 “교육감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임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2015년도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으로 감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됨

〈표 4-4〉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2015년도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증 감	증감률
		수입	지출			
감 채 기 금	0	0	0	0	0	

○ 동 감채기금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2항[1]에서는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16.)

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15. 10월말 현재 지방채 미상환 잔액은 총 3,707억 3,500만원으로 상환재원 전액이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2015년도에 지방채의 이자만을 상환할 계획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채기금을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교육재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채기금에 일정부분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5〉 지방채 발행 현황

2014.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사 업 연 도)		차 입 액 (A)	상 환 액 (B)	잔 액 (C=A-B)
국가 부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09)	253,632	74,493	180,139[2]
	학교신설(`13)	131,082	0	131,082
	학교신설(`14)	59,514	0	59,514
합 계		444,228	74,493	370,735

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09) 잔액 : 180,139백만원**
- 2014년도 추경예산 확정 후에 `09년도 발행하였던 253,632백만원 중 상환 잔액 180,139백만원을 차환하고 183,529백만원(원금1801억원, 이자 25억원, 중도상환수수료 9억원)을 재발행 예정임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4. 12. 11.(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3명

- 위 원 장 : 김제리(환경수자원)
- 부위원장 : 김정태(도시계획관리), 이복근(보건복지)
- 위　　원 : 이현찬(행정자치), 박양숙(기획경제),
  이정훈(환경수자원), 김창원(문화체육관광),
  김선갑(보건복지), 김동율(도시안전건설),
  김상훈(교통), 강성언(교육)
  박마루(보건복지), 이혜경(문화체육관광)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토) 10:00 ~ 12. 13.(토) 12:00
- 장 소 : 후생동 4층
- 참 석 : 예결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6.(화) 15:00 ~ 12. 16.(화) 18:30
- 장 소 : 후생동 4층
- 참 석 : 예결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 2014년 11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확보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관련법규

가.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주요내용

가. 2015년도 감채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2015년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으로 감채기금은 조성하지 않음

(사유 : 조례 제3조제②항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임)

나. 2015년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붙임)

○ 2015년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 임

4. 참고사항

○ 지방채 발행(차입) 및 원금 상환내역(2014.10.31. 현재)

(단위 : 백만원)

발행대상 회계연도	상황재원 부담주체	상환 조건	사업명	발행액 (A)	원금 상환액 (2010~2014)(B)	'14년 현재 원금잔액 (C=A-B)	비고
'09년	교육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53,632	73,493	180,139	
'10년	교육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학교 신설	149,132	149,132	-	
'13년	교육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학교 신설	131,082	-	131,082	
'14년	교육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학교 신설	59,514	-	59,514	
소 계				**593,360**	**222,625**	**370,735**	
'10년	자체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세입 결함	204,635	204,635	-	
소 계				**204,635**	**204,635**	-	
총합계				**797,995**	**427,260**	**370,735**	

- 지방채 연도별 원금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발행대상 회계연도	상황재원 부담주체	사업명	발행액 (A)	연도별 원금 상환내역						'14년 현재 원금잔액 (C=A-B)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B)		
'09년	교육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53,632	43,223	-	-	30,270	-	73,493	180,139	
'10년	교육부	학교신설	149,132	-	143,000	6,132	-	-	149,132	-	
'13년	교육부	학교신설	131,082	-	-	-	-	-	-	131,082	
'14년	교육부	학교신설	59,514	-	-	-	-	-	-	59,514	
소 계			**593,360**	**43,223**	**143,000**	**6,132**	**30,270**	-	**222,625**	**370,735**	
'10년	자체	세입결함	204,635	-	128,078	48,834	27,723	-	204,635	-	
소 계			**204,635**	-	**128,078**	**48,834**	**27,723**	-	**204,635**	-	
총합계			**797,995**	**43,223**	**271,078**	**54,966**	**57,993**	-	**427,260**	**370,735**	

붙임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1부.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2014.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2015년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으로 감채기금은 조성하지 않음
[사유: 조례 제3조제②항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임]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 개요

가.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4.10.16 개정)

나. 설치목적 :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나.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2015년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으로 **감채기금은 조성하지 않음**
[사유: 조례 제3조제②항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임]

다. 지방채 발행(차입) 현황[2014.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사 업 연 도)		차 입 액 (A)	상 환 액 (B)	잔 액 (C=A-B)
국가 부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09)	253,632	73,493	180,139
	학교신설('13)	131,082	0	131,082
	학교신설('14)	59,514	0	59,514
합 계		444,228	73,493	370,735

※ 2014.12.16. 추경예산 확정 후에 '09년도 발행하였던 253,632백만원 중 상환 잔액 180,139백만원을 차환하고 183,529백만원(원금 1,801억원, 이자 25억원, 중도상환 수수료 9억원)을 재발행 예정임.

라.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52조

○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발생 시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시행령제60조

○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금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4.10.16.개정)

○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채발행한도액설정및지방채무관리등에관한예규(교육과학기술부예규제34호,2010.10.26.)

○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함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 지방재정법제52조에의한 원리금상환은 감채기금 적립비율로인정

◆ 2015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행정안전부,2014.7)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3.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0	0	0	0	0	

나. 재원조성 :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다. 지원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라. 지원대상 : 지방채 원리금 상환

Ⅱ 자금운용 계획

1. 기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0	0	0	합 계	0	0	0
출연금	0	0	0	고유목적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0	0	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수입계획

○ 없음

3. 지출계획

○ 없음

Ⅲ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인력 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05년까지	0	0		0	0	0	0		0
2006년도	0	0		0	0	0	0		0
2007년도	19,798,852	19,798,852		0	0	19,798,852	19,798,852		0
2008년도	51,226,547	51,226,547		0	0	51,226,547	51,226,547		0
2009년도	81,480,428	81,480,428		0	0	81,480,428	81,480,428		0
2010년도	74,649,397	74,200,000		449,397	0	74,649,397	74,649,397		0
2011년도	86,684,470	86,318,544		365,926	0	86,684,470	86,684,470		0
2012년도	0	0		0	0	0	0		0
2013년도	30,614,308	30,270,000		344,308	0	30,614,308	30,614,308		0
2014년도	0	0		0	0	0	0		0
계	344,454,002	343,294,371		1,159,631	0	344,454,002	344,454,002		0

Ⅳ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감(ⓑ-ⓐ)	
합 계		0	0	0	0	
예치금		0	0	0	0	
예탁금		0	0	0	0	

Ⅴ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채 직접상환 계획

○ 없음

【 참고자료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교육채상환액 (잉여금의 20%)	결산상 잉여금	비고
2008	398,426,622	0	398,426,622	
2009	370,898,818	0	370,898,818	
2010	310,010,078	0	310,010,078	
2011	223,621,992	55,908,000	279,529,992	
2012	304,383,790	76,096,000	380,479,790	
2013	88,493,872	0	88,493,872	

※ 2008~2010년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채 상환(적립)액을 결산 후에 다음연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상환